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무원 등의 사직 시점 간주 규정 삭제〉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50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호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29.
3. 회 부 일 : 2024. 1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시점에 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사직시점을 실제 사직원의 처리가 아닌 사직원의 접수 시점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직원의 수리지연으로 입후보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사직원 처리 제한 규정에 따라 사직원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면서도 당선이 되거나 비례대표의원의석을 승계할 후보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후보자 자신에게 불리한 징계나 범죄사건 무마에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원칙적으로 사직처리가 된 사람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삭제).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사직하는 경우 사직이 되는 시점을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③ (생략) ¹⁾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所屬機關의 長 또는 所屬委員會에 辭職願이 접수된 때에 그 職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⑤ (생략) ²⁾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⑤ (현행과 같음)

1)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현행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나오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일정기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면서, 해당 공무원 등이 사직하는 경우 사직이 되는 시점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공무원 등이 선거일 전 일정기간까지 사퇴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한편,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임.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2)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및 사직 간주규정 취지 》

(대법원 2021.4.29.선고 2020수6034 판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공무원에게 선거일 전 90일까지 공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54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공무원이 법정기한 내에 그 직을 그만둔 상태로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의 사직원 수리 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그 사직원 수리 지연·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것 없이 오직 공무원의 사직원 접수 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 사무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집행할 수 있고 후보자등록의 효력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非違)³⁾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도록 하고,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⁴⁾

3) 비위(非違)란 법에 어긋남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4)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공무원의 퇴직 제한으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며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거나⁵⁾ 비례대표의원의석을 승계할 후보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경우⁶⁾가 발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21. 6. 8.>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5) 황운하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3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고, 이후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음.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하여 당선됨. 이에 상대 후보(이은권)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한 것은 당선무효라는 이유로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사직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함. (출처: 의회법률정보포털 법률뉴스, <https://law.nanet.go.kr/natlaw/lawNewsPaper/lawNewsPaperView.do?bbsSid=61306>)

6)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024년 3월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이유로 사직서를 냈으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검지 의혹 관련 재판으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음. 사직서 제출 뒤 조국혁신당에 입당하여 총선 비례대표 명단에 22번째 후보로 등록함. 이 대변인은 22대 국회 임기 종료시까지 비례대표

생활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사직하는 경우 사직이 되는 시점을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원칙적으로 사직 처리가 완료된 사람만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직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공무원 등의 사직 시점을 사직처리를 완료한 시점으로 보게 될 경우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공무원 등의 사직 시점 간주 규정을 삭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직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며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을 필요성과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공무담임권⁷⁾의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공무담임권을 국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된다고 밝히며 법무부의 해임 처분 전까지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함. (출처: 한국일보(2024.7.31.), “조국혁신당 대변인활동 이규원 검사...대검, 감찰”(<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3121050001650>), 서울경제(2024.11.29.), “정치활동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사직 해임”(<https://www.sedaily.com/NewsView/2DH18LU1C7>)

7)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 사직원 수리 지연으로 입후보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